

## 프랑스 성매매 방지 관련법

정보신청기관 : 대검찰청 형사과

### I. 서론

성매매 (Prostitution) 는 보수 및 보수 지불 약속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 국의 경우, 성매매를 금지하는 입법 형태가 있는 반면, 성매매에 대해 법을 통한 규제 또는 일정 형태의 성매매를 폐지하는 입법 형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각 국의 입법안은 성매매 금지, 폐지 및 규제의 세 가지 입법 개념을 나타낸다.

성매매 금지 체제는 성매매, 관련 조직 및 성매매 착취를 범죄로 규정하며, 성매매 수요자도 포함하는 모든 성매매 관련자를 형법으로 처벌한다.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등의 아랍권 국가, 필리핀, 베트남 및 네바다 주를 제외한 미국 등이 성매매 금지 체제를 채택한다.

성매매를 허용하는 입법 체제의 경우 법을 통해 성매매를 감독, 규제하는 규제 체제와 성매매를 제외한 관련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 폐지 체제로 구분된다.

성매매 규제 체제는 공창, 성매매 허가증, 성매매의 경찰 등록 및 세밀한 규정에 준거한 감독 기관을 통한 허가 등의 규제를 통해 성매매를 허가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매매와 위협에 근거한 성매매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성매매자는 사법적 지위 및 사회적 지위의 혜택을 받는 성 산업 근로자로 간주되며, 포주 또한 직접적인 범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 성매매를 규제하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 창녀촌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1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연수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그 외 터키, 스위스, 헝가리, 그리스 및 오스트리아가 감독과 규제를 통한 성매매 허가 체제를 유지한다.

성매매 폐지 체제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 존중의 사상에 바탕을 둔다. 프랑스는 공공 위생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창녀촌을 폐쇄한 1946년 4월 13일 마르뜨 리샤르(Marthe Richard) 법안과 1949년 12월 2일 채택된 국제 연합의 “인신 매매 및 제3자에 대한 성매매 착취 처

벌을 위한 국제 조약(Convention internationale pour la répression de la traite des êtres humains et de l'exploitation de la prostitution d'autrui)"을 1960년에 조인한 이후, 성매매 폐지 국가군에 속한다. 경찰은 감독 역할을 담당치 않는 대신, 성매매(호객 행위)로 인한 공공 결과에 대한 억제 및 포주 처벌임무를 맡는다. 즉 성매매자는 사회적 피해자로 간주하며,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활동과 성매매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활동을 중시한다. 반면, 모든 형태의 포주 행위를 처벌한다. 현재 성매매에 관한 프랑스 법은 성매매자가 동의했다라도 포주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성매매자를 특별히 지목하는 모든 형태의 규범이나 행정적 관행을 폐지한다. 또한 성매매 예방을 위한 사회적 조치 및 성매매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을 보장한다. 성매매 폐지 체제를 유지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성매매 수요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프랑스는 미성년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매매 수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한 성매매 수요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 II. 입법 역사

프랑스는 백인여성의 인신매매 처벌(1910),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1921), 성인 여성 인신매매(1933), 인신매매 및 제3자의 성매매 착취(1949, 1960년 조인), 인신매매 박멸(유럽 평의회, 2005년 5월 22일 서명, 2007년 8월 1일 조

인)에 관한 조약 등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관한 다수의 조약에 서명했다.

1946년 4월 13일 마르뜨 리샤르 법(loi dite Marthe Richard)은 공공 위생 및 여권 신장을 위해 창녀촌(maisons closes)을 폐쇄함으로써 프랑스는 성매매 폐지 국가군에 진입했다.

1949년 12월 2일 국제 연합은 "인신 매매 및 제3자에 대한 성매매 착취 처벌을 위한 국제 조약"을 채택했다. 조약은 포주행위를 금지하며, 개인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매매의 피해를 확인하고, 인신 매매 발달로 인한 사회적 결과를 강조했다. 반면 성매매 수요자에 대한 비난은 언급하지 않았다.

1960년 프랑스 정부는 상기 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성매매 폐지국가군에 진입했다. 조약의 조인 이후 1960년에 다수의 법, 조례 및 공문을 채택해 성매매자 및 성매매 수요 행위에 대한 조항을 폐지했다. 하지만 1960년 조례들과 1960년 7월 30일 법률 n° 60-773을 채택함으로써 프랑스는 피해자로서의 성매매자의 지위를 사회적 부적응자로 하락시켜 성매매 행위를 알콜중독, 동성애 또는 폐결핵과 같은 사회적 재앙으로 선언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자발적인 성매매와 강요된 성매매를 동일시했으며, 성매매 종사자의 사회 복귀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사회 재적응 절차를 개시했다. 1960년 11월 25일 법률 n° 60-1246은 각 도(道)(departement)에 성매매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전문 기관(예방 및 사회 복귀 서비스)을 설립했으

나 현재 모든 해당 기관은 활동이 전무해 폐지되었다. 1960년 조례 제185-1조는 각 도(道)에 성매매의 위험에 처한 개인을 찾아내서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시설의 창설과 성매매자를 위한 의료 복지를 시행할 것을 규정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국가는 민간 단체에 상기 행위를 이임했으며, 1970년 도지사에게 성매매 및 포주 행위 감독을 명령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1983년 사회 활동 및 가족에 관한 법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 제121-9조)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범위(물질, 교육, 심리적 지원 및 예방 활동의 사회-의료 활동)와 성매매의 위험에 처한 미성년자(또는 21세 미만의 성인)의 보호를 위한 행동을 규정한다.<sup>1)</sup> 친권에 관한 조항은 미성년 성매매자에 대한 교육적 지원 및 보호 조치를 규정한다. 또한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험 및 윤리 의식에 대한 심각한 침해 위험에 처한 아동을 발견한 경우 이를 담당 사회 복지 기관 또는 공화국 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2003년 3월 18일 국내 치안에 관한 법(Loi sur la sécurité intérieure de 2003 : 당시 내무 장관이었던 사르코지의 이름을 붙여 일명 사르코지 법이라고 명명)을 채택해 성매매자의 호객 행위를 금지했다. 동구 유럽 및 아프리카로부터 인신

매매를 통한 외국 여성의 프랑스 영토로의 유입이 전례없이 증가함에 따라 성매매 수요자나 포주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없이 피해자인 성매매 공급자의 처벌을 선택했다. 즉 수동적인 호객행위 (Racolage passif) 라는 새로운 범법 행위를 규정해 2개월 징역 및 3,750 유로의 벌금형을 규정했다. 또한 포주의 범죄 행위 및 인신 매매 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성매매 공급자 여성의 구류 연장 및 해당 여성의 국외 추방을 규정하고, 성매매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 개인을 공법이 정하는 숙박 시설에 수용하게 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 III. 법안 내용

프랑스 국내법은 성매매 행위가 공익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세무 당국 또한 성매매 종사자를 비영리 이익을 획득하는 개인 사업자로 수입을 신고해야 하는 직업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프랑스는 성매매자를 경제 활동인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프랑스 형법(제225-12-1조)은 “보수 또는 보수 약속을 교환 조건으로 미성년자 또는 질병, 장애, 정신적 및 육체적 결함 또는 임신



1) Partie Législative, Article L121-9 : « Dans chaque département, l'Etat a pour mission de rechercher et d'accueillir les personnes en danger de prostitution et de fournir l'assistance dont elles peuvent avoir besoin, notamment en leur procurant un placement dans un des établissements mentionnés à l'article L. 345-1, et d'exercer toute action médico-sociale en faveur des personnes qui se livrent à la prostitution. »

상태로 인해 성매매를 행하는 특정한 약점을 지닌 모든 개인에게 성적인 성격의 관계를 청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획득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년에 의한 성매매를 제외한 미성년자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매매 행위는 범죄로 규정했다.<sup>2)</sup>

2003년 3월 18일 국내 치안에 관한 법(Loi sur la sécurité intérieure n° 2003-239 du 18 mars 2003)은 인신매매가 범죄라는 법개념을 도입해 보수, 모든 기타 이익, 또는 보수 약속의 교환을 조건으로 제3자 또는 포주에 의한 폭력, 성적 학대, 구걸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근로 또는 숙박을 강요하거나 범죄를 행하도록 강요할 목적으로 개인을 모집, 운송, 이전, 숙박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했다.<sup>3)</sup>

성매매에 관한 법률은 2003년 3월 18일 국내 치안을 위한 법 n° 2003-239에 의해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프랑스의 성매매 폐지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없이 호객 행위와 포주

금지 조항을 통한 성매매 금지 요소를 도입했다. 이 조항을 통해 동유럽 및 아프리카의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원활한 검거를 위한 사법 당국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체포가 가능해졌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호객 행위를 하는 성매매 여성의 체포로 인해 해당 여성들은 법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잠적하면서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악화, 수입 격감, 사회 복귀 조건 악화, 위생 조건 악화, 수입 감소에 따라 성매매 여성이 위험이 높은 성행위까지 감행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 1. 포주 행위(Proxénétisme)

프랑스 법에서 포주 행위의 개념은 다양한 상황에 준거하여 정확한 개념 추출에 혼란을 야기했다. 일반적으로 포주 행위란, 제3자에 의한 성매매 착취를 의미하며, 성매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의미한다. 판례의 경우, 식당 테라



- 2) Le fait d'avoir recours à une personne vulnérable pour exercer une activité de prostitution relève du code pénal (article 225-12-1 du code pénal) ; en effet, constitue une infraction (article 225-12-1 du code pénal) "le fait de solliciter, d'accepter ou d'obtenir, en échange d'une rémunération ou d'une promesse de rémunération, des relations de nature sexuelle de la part d'un mineur [...] ou de toute cette personne présente une particulière vulnérabilité, apparente ou connue de son auteur, due à une maladie, à une infirmité, à une déficience physique ou psychique ou à un état de grossesse qui se livre à la prostitution."
- 3) Article 225-4-1 : « le fait, en échange d'une rémunération ou de tout autre avantage ou d'une promesse de rémunération ou d'avantage, de recruter une personne, de la transporter, de la transférer, de l'héberger ou de l'accueillir, pour la mettre à la disposition d'un tiers, même non identifié, afin soit de permettre la commission contre cette personne des infractions de proxénétisme, d'agression ou d'atteintes sexuelles, d'exploitation de la mendicité, de conditions de travail ou d'hébergement contraires à sa dignité, soit de contraindre cette personne à commettre tout crime ou délit. La traite des êtres humains est punie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de 150 000 Euros d'amende. » (Article 225-4-1 Loi n° 2003-239 du 18 mars 2003 art. 32 Journal Officiel du 19 mars 2003).

스에서 성매매자의 호객 행위를 용인한 식당 주인(과기원, 1973), 경찰의 검거시 성매매자에게 미장원을 빌려 준 미용실 주인(과기원, 1971), 창녀촌에서 일하는 부인에게 송금을 받은 전쟁 포로 남편(과기원, 1944) 등에게 포주의 개념을 적용했다. 1993년까지 성매매자와의 단순한 동거에 대해서도 포주의 개념이 적용되었으나 형법 개정으로 인해 관련 조항은 폐지되었다. 오늘날 성매매자와의 단순 동거시, 가구 수입이 전적으로 성매매로부터의 수입에 의지하거나 생활 수준이 성매매 수입액에 대한 세금 신고액을 넘을 경우 포주의 개념이 적용되어 처벌된다. 2003년도 국내 치안에 관한 법은 성매매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호텔을 이용한 성매매에 대한 징벌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포주란 협박, 폭력, 사기 또는 다른 모든 수단을 통해 특정인에게 현금 취득을 목적으로 타인과의 성관계를 주선, 강요하는 자, 성매매를 지원하는 자(경비원, 기사, 경찰 등) 및 호텔 등 부동산(즉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주지를 소유하거나 해당 거주지를 판매)을 이용한 자로 정의한다.

형법은 포주 행위의 형태에 따라 단순, 가중(미성년자 및 폭력을 동반) 및 범죄 행위(범죄 조직 또는 야만적 행위 및 고문을 동반)로 구분한다. 상기 포주 행위에 대해서 프랑스 형법은 7

년 징역 및 15만 유로의 벌금부터 20년 징역 및 300만 유로의 벌금(야만적인 행위나 고문이 동반되었을 경우 무기 징역 및 450만 유로 벌금)을 규정한다. 한편 1994년 형법 개정시 성매매 제공자와의 동거자에 대한 징벌 조항은 폐지되었다.(형법 제225-5조 내지 제225-12조).

## 2. 성매매 수요자

현재 프랑스 국내법은 성매매 수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프랑스 형법은 성매매 수요자가 미성년자 또는 사회적 약자(임신부, 환자, 장애인 등)를 상대로 하는 성매매의 수요자일 경우, 위에서 언급한 포주에 대한 형량과 동일하게 3년 징역과 4만 5,000유로의 벌금형을 규정한다(형법 제225-12-1조).

## 3. 호객 행위(Racolage)

2003년 국내 치안에 관한 법 제50조는 “보수 지불 또는 보수 지불 약속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수동적인 태도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에 의한 공공 장소에서 제3자에 대한 호객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해 2개월 징역 및 3,750유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sup>4)</sup>

또한, 인신 매매의 피해자인 외국인이 포주에



4) Article 50 de la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pour la sécurité intérieure : « Art. 225-10-1. - Le fait, par tout moyen, y compris par une attitude même passive, de procéder publiquement au racolage d'autrui en vue de l'inciter à des relations sexuelles en échange d'une rémunération ou d'une promesse de rémunération est puni de deux mois d'emprisonnement et de 3 750 EUR d'amende. »

대한 고소를 제출할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임시 체류 허가를 발급한다. 피의자가 최종적인 형벌을 선고받았을 경우, 고소인 또는 증인에게 체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Art.76 de la loi n°2003-239 du 18 mars 2003 pour la sécurité intérieure), 현실에서는 적용례가 없어 사문화되었다.

#### 4. 미성년 성매매

프랑스 민법(제16-1조) 및 프랑스 형법(제225-12-1조)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금지한다.

2002년 3월 4일 친권에 관한 법 제13조 또한 프랑스 영토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금지한다(Art. 13 de la loi du 4 mars 2002 sur l'autorité parentale). 2002년 3월 4일 이후, 간헐적일지라도 성매매를 행하는 15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매매의 수요자는 3년 징역 및 4만 5,000유로의 벌금이나 7년 징역 및 1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외국에서의 아동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여행자도 프랑스에서 처벌된다. 1994년 채택되고 1998년 확대 개정된 치외 법권에 관한 법(lois d'extraterritorialité)은 외국에서 아동 성매매의 위법 및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개인의 경우, 해당 행위 형태에 따라 10년 징역형 및 15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상기 조항은 1997년 드라기냥(Draguignan) 사건에서 처음 적용되어 피고에게 7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2000년 10월 파리 중죄 법원은 11살의

여아에게 구강 성관계를 행한 프랑스 섹스 관광객에게 유죄를 인정해 7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 5. 의회 입법 제안서(Les propositions de la mission parlementaire)

2011년 4월 13일 프랑스 하원 조사 위원단은 프랑스에서의 성매매에 관한 의회 보고서를 법사 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프랑스 전역에 확산되어 있는 성매매 현황과 전통적 형태의 성매매로부터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외국인의 프랑스 영토 내에서의 성매매 형태로의 진화 상황과 상기 주제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인식 진화 과정과 공공정책의 대응 자세에 대해 보여 주었다.

보고서는 성매매 수요자를 처벌하는 스웨덴 모델을 포함하는 성매매에 관한 30개의 입법안을 제안한다. 사실상 스웨덴 정부는 수년 전부터 성인 성매매 수요자 처벌을 입법화했으며, 몇 개월 전 상기 법안의 효력에 대한 스웨덴 보고서가 제출되어 법안의 효과와 성매매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성매매에 대한 홍보와 성평등에 대한 학교 교육 시행, 성매매 종사자의 권익에 대한 용이한 접근 수단의 설립, 인신매매 피해자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증 발급 및 성매매 종사자가 성매매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성매매 현장에 직접 진출해

## 맞춤형 법제정보

지원을 제공하는 민간 사회단체의 활동 지원과 예방 및 홍보 활동 증가에 대한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사회 활동 및 가족에 관한 법 제 121-9조에 준거해 국가가 성매매 종사자 지원 및 성매매 예방과 홍보 임무를 수행하는 사회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의 일환으로 성매매 종사자를 위한 사회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중단에 대해 경고하고,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관해 국가가 지정하는 조사원과 전문가 그룹 간

의 협력 임무 창설을 제안했다(현재 유럽 연합 법안에 부합하는 전문가 그룹 창설에 관한 입법안이 심의 중).

향후 상기 의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매매 수요자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강 홍 진**

(해외입법조사위원, SAINT Consulting 대표)